

 <p>거창군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48px; margin: 0;">공 보</h1> <p style="font-size: 24px; margin: 0;">제785호 2021. 1. 8.(금)</p>	
---	--	---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제2021-1호 거창군계획시설(학교 한국승강기대학) 결정(세부시설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정정 고시	2
제2021-2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 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	5
제2021-3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 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	7
제2021-4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 대로3-13호선 등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	9
제2021-5호 거창군계획시설(공간시설 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	13

공 고

제2021-11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주차장)사업 공사완료 공고	16
제2021-39호 「거창군 지하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	17
제2021-47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·공고	24
제2021-48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	25
제2021-4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	26
제2021-50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	28

회 램									
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1호

거창군계획시설(학교:한국승강기대학) 결정(세부시설변경) 및
 실시계획(변경) 인가 정정 고시

『거창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학교:한국승강기대학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88조 6항 및 「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세부시설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창군수

※정정사유 : 오탈자 수정

1.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-1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군계획시설(학교:한국승강기대학)
- 명칭 : 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

다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- 부지면적 : 56,525㎡
- 금회시행면적 : 2,815㎡
- 사업내용 : 실습동 신축 당초 건축면적 513.42㎡, 연면적 1,992.28㎡
변경 건축면적 558.00㎡, 연면적 953.91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대표 김천영
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

마. 사업시행기간

- 당초 : 2019. 01. 31. ~ 2021. 02. 28.
- 변경 : 2019. 01. 31. ~ 2022. 02. 28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연번	주소	지번	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	본번	부번					
계					2,815	2,815		
1	거창읍 송정리	540	1	답	2,255	2,255	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	

2	거창읍 양평리	538		전	364	364	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	
3	거창읍 양평리	541		전	60	60	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	
4	거창읍 양평리	540	2	구	136	136	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	

사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

가. 학교시설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8	한국승강기 대학	대학	거창읍 송정리 700번지 일원	56,525	-	56,525	경고465호 (’92.12.24)	

나.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건물명	부지면적 (㎡)	구성비 (%)	건축면적 (㎡)	건축연면적 (㎡)	규 모	비 고
교육 시설	1	본관동	2,828.0	5.0	819.69	2,391.01	지상3층	
	2	제1공학관	2,083.0	3.2	1,471.24	2,673.98	지상2층	
	3	제2공학관	1,826.0	3.8	1,565.73	3,945.97	지상3층	
	4	창조관	683.0	1.2	570.44	2,383.98	지하1층 지상4층	
	5	실습동	3,068.0	5.4	513.42 558.00	1,992.28 953.91	지상4층 지상3층	변경
	6	도서관	2,802.0	5.0	1,395.63	4,698.36	지상4층	
	7	연구동	701.0	1.2	370.90	717.60	지상2층	
	8	에스컬레이터 실습동	545.0	1.0	371.28	371.28		
	소 계			14,536.0	25.7	7,078.33 7,122.91	19,174.46 18,136.09	
지 시 원 설	9	복지후생관	1,381.0	2.4	725.53	1,724.03	지하1층 지상2층	
	10	기숙사	4,904.0	8.7	2,176.26	10,088.76		
	10-1	제1기숙사			1,382.5	4,060.50	지상3층	
	10-2	제2기숙사			793.76	6,028.26	지하1층 지상6층	
	11	민원실	93.0	0.2	33.93	33.93	지상1층	
	소 계			6,378.0	11.3	2,935.72	11,846.72	
기 시 타 설	12	운동장	7,864.0	13.9				
	13	농구장	931.0	1.6				

	14	테니스장	1,421.0	2.5				
	15	광 장	1,415.0	2.5				
	16	도로 및 주차장	14,129.0	25.0				
	소 계		25,760.0	45.6				
녹 지	17	녹 지	9,851.0	17.4				
합 계			56,525.0	100.0	10,014.05 10,058.63	31,021.18 29,982.81		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2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창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
 - 명칭 :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종류	시설명	위 치	시 행 규 모(m ²)	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	
			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	
군 계획시설	교통시설 (주차장)	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29번지	1,499.1	1,499.1	894.75	894.75	경상남도 고시 제2014-249호 (2014.7.10.)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이태근 외 3인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1. 11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과 같음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지분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,499.1	1,499.1						
1	거창읍 송정리	1129	차	1,499.1	1,499.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26	이태근	1/4			
					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20	김극주	1/4			
					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4길 24	장인숙	1/4			
					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세동네2길 40, 203동 1902호	김수정	1/4			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3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거창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창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2번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
 - 명칭 : 거창 송정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
3.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

종류	시설명	위 치	시 행 규 모(m ²)	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		
			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	
군 계획시설	교통시설 (주차장)	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2번지	1,512.8	1,512.8	1,196.07	1,196.07	경상남도 고시 제2014-249호 (2014.7.10.)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최 민 식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
5. 사업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1. 11. 30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과 같음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,512.8	1,512.8					
1	거창읍 송정리	1102	차	1,512.8	1,512.8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21	최민식			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4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3-13호선 등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가조 마상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창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0-9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3-13호선 등)사업
 - 명칭 : 가조 마상오거리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공사
3. 사업면적 및 규모
 - 북단교차로 : A=2,339m²(회전교차로 및 교통섬)
 - 남단교차로 : A=2,628m²(회전교차로 및 교통섬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명 : 거창군수(건설과장)
 - 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-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~ 2021. 12. 31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1) 복단교차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7,825	2,339					
1	가조면 마상리	80-9	답	24	24	가조면 지산로 1474	변현태			
2	가조면 마상리	699-9	구	6,809	205		국(농림수산 부)			
3	가조면 마상리	708-2	도	995	402	가조면 수월리	김임권			
4	가조면 마상리	708-10	도	66	29		이영택			
5	가조면 마상리	80-7	답	87	87		경상남도			
6	가조면 마상리	400	구	3,395	96		국(농림수산 부)			
7	가조면 마상리	81-1	답	37	37		경상남도			
8	가조면 마상리	80-4	답	6	6		경상남도			
9	가조면 마상리	399-5	답	112	112	서울 강동구 암사동 447-8	전원순			
10	가조면 마상리	399-4	답	177	177	가조면 마상리230-1	신정재			
11	가조면 마상리	243-7	도	3	3		국(내무부)			
12	가조면 마상리	243-2	도	129	129	-	하경팔			
13	가조면 마상리	399-3	도	37	37		거창군			
14	가조면 마상리	243-4	도	93	93	-	하경팔			
15	가조면 마상리	398-3	답	3	3	가조면 마상리 308	유옥조			
16	가조면 마상리	398-1	도	74	24		거창군			
17	가조면 마상리	245-4	도	182	29	-	김문주			
18	가조면 마상리	245-6	도	250	59	가조면 마상리 279	김해김씨종 중			
19	가조면 마상리	243-5	도	17	17	-	하경팔			
20	가조면 마상리	245-7	도	13	2	가조면 마상리 279	김해김씨종 중			
21	가조면 마상리	245-2	도	397	68	-	김문주			
22	가조면 마상리	91-2	답	94	31		경상남도			
23	가조면 마상리	91-3	답	51	18		경상남도			

24	가조면 마상리	91-11	답	308	4		경상남도			
25	가조면 마상리	82-2	답	30	30	서울 은평구 역촌동83-65	김영곤			
26	가조면 마상리	81-2	답	20	20	가조면 마상리 268	전관진			
27	가조면 마상리	87-3	도	2,236	107		국(농림수산 부)			
28	가조면 마상리	91-9	답	64	64	서울 송파구 오금동 44	문재운			
29	가조면 마상리	91-9	답	294	96		경상남도			
30	가조면 마상리	91-8	답	78	78		경상남도			
31	가조면 마상리	91-7	답	249	249		경상남도			
32	가조면 마상리	550-2	도	1,495	3		국(농림수산 부)			

2) 남단교차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1,557	2,628					
1	가조면 마상리	147-1	도	1,972	315		거창군			
2	가조면 마상리	155-5	전	238	186		경상남도			
3	가조면 마상리	152-1	공	10	10		거창군			
4	가조면 마상리	150-3	전	28	1		거창군			
5	가조면 마상리	861-34	도	702	114		국(국토교통 부)			
6	가조면 마상리	170-2	도	56	8	가조면 마상리 311	장홍득			
7	가조면 마상리	151-3	도	18	18	가조면 마상리 326	전영주			
8	가조면 마상리	151-1	도	66	54	-	이우환			
9	가조면 마상리	189-6	도	763	40		거창군			
10	가조면 마상리	155-1	도	43	43	가조면 마상리 262	최정태			
11	가조면 마상리	155-6	도	156	156	가조면 마상리 262	최정태			
12	가조면 마상리	155-8	도	122	122		거창군			
13	가조면 마상리	170-11	답	39	32		거창군			
14	가조면 마상리	155-2	답	11	11	가조면 마상리 262	최정태			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15	가조면 마상리	170-6	답	6	6		거창군			
16	가조면 마상리	167-10	답	473	296		거창군			
17	가조면 마상리	167-1	답	7	4		거창군			
18	가조면 마상리	168-1	답	443	180		거창군			
19	가조면 마상리	168-2	답	17	17		거창군			
20	가조면 마상리	860-1	천	5,272	95		국(국토교통 부)			
21	가조면 마상리	155-18	답	293	230		경상남도			
22	가조면 마상리	155-20	답	58	58		거창군			
23	가조면 마상리	155-11	도	227	211		거창군			
24	가조면 마상리	161-1	천	64	1	가조면 지산로 1466	이현란			
25	가조면 마상리	162-9	천	51	33		경상남도			
26	가조면 마상리	167-3	도	109	109	-	정규수			
27	가조면 마상리	166-2	도	96	96	-	정규수			
28	가조면 마상리	166-3	도	16	16	-	정규수			
29	가조면 마상리	166-6	도	11	11	-	정규수			
30	가조면 마상리	166-7	도	9	9	-	정규수			
31	가조면 마상리	167-11	답	32	12		거창군			
32	가조면 마상리	167-4	도	7	7	17	박외수			
33	가조면 마상리	167-12	천	5	5		거창군			
34	가조면 마상리	167-5	도	23	23	-	이지구			
35	가조면 마상리	167-9	천	56	44	가조면 마상리 190-4	마청범			
36	가조면 마상리	165-2	대	3	3	가조면 마상리 190-4	마청범			
37	가조면 마상리	166-9	천	11	8	가조면 마상리 190-4	마청범			
38	가조면 마상리	166-10	구	8	8		농어촌공사			
39	가조면 마상리	166-11	천	16	16	가조면 마상리 190-4	마청범			
40	가조면 마상리	169-3	대	20	20		거창군			

●거창군 고시 제2021-5호

거창군계획시설(공간시설:교통광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『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공간시설:교통광장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7일

거창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879-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군계획시설(공간시설:교통광장)사업
 - 명 칭 : 거창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
3. 사업면적 및 규모
 - 사업 면적 : A=20.079m²
 - 사업 규모 : 광장 A=20,079m²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거창군수(건설과장)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)
 - 당 초 : 2019. 06. 27. ~ 2020. 10. 30.
 - 변 경 : 2019. 06. 27. ~ 2021. 12. 31.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
7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 고
						주 소	성 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			48,947	20,079					
1	거창읍 대평리	888-1	답	2,003	2,003		거창군			
2	거창읍 대평리	874	답	1,997	1,997		거창군			
3	거창읍 대평리	868-1	도	632	265		국(농림수산부)			
4	거창읍 대평리	10-2	구	28,732	1,025		국(농림수산부)			
5	거창읍 대평리	820	답	1,706	1,706		거창군			
6	거창읍 대평리	806	답	517	147		거창군			
7	거창읍 대평리	807	답	245	245		국(국토교통부)			
8	거창읍 대평리	821	답	2,202	2,202		거창군			
9	거창읍 대평리	808	답	750	750		거창군			
10	거창읍 대평리	810-1	답	160	160		거창군			
11	거창읍 대평리	810-10	답	319	319		국(국토교통부)			
12	거창읍 대평리	868-2	도	56	56		국(농림수산부)			
13	거창읍 대평리	879-3	도	493	493		거창군			
14	거창읍 대평리	879-1	도	1,314	1,314		국(국토교통부)			
15	거창읍 대평리	879	답	129	129		국(국토교통부)			
16	거창읍 대평리	878-2	답	131	131		국(국토교통부)			
17	거창읍 대평리	878-1	답	262	262		거창군			
18	거창읍 대평리	878	답	360	360		거창군			
19	거창읍 대평리	877	답	258	258		거창군			
20	거창읍 대평리	876	답	1,028	1,028		거창군			
21	거창읍 대평리	875	답	1,028	1,028		거창군			
22	거창읍 대평리	892	답	123	123		국(국토교통부)			
23	거창읍 대평리	891-1	답	148	148		국(국토교통부)			
24	거창읍 대평리	891	답	880	880	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	유우연			

							거창군			
25	거창읍 대평리	890	답	1,005	1,005	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	유우연			
							거창군			
26	거창읍 대평리	889	답	1,005	1,005	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	유우연			
							거창군			
27	거창읍 대평리	810-6	도	14	14		국(국토교통부)			
28	거창읍 대평리	810-7	답	183	183		거창군			
29	거창읍 대평리	808-5	답	270	270		국(국토해양부)			
30	거창읍 대평리	808-7	답	442	442		국(국토교통부)			
31	거창읍 대평리	821-1	답	36	36		국(국토해양부)			
32	거창읍 대평리	807-5	답	519	95		국(국토해양부)			

●거창군 공고 제2021-11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 공사완료 공고

거창군 고시 제2018-102호(2018.8.23.)로 실시계획 인가된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이 완료되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창군수

1. 사업의 위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-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 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주차장)사업
 - 명 칭 :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 - 사업의 면적 : A=4,810.0m²
 - 사업의 규모 : 건축면적 A=1,446.61m², 연면적 A=1,446.61m²
4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-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 - 성 명 : 거창군수(산림과장)
4. 사업시행기간 : 2018. 8. 23. ~ 2019. 03. 29.
5.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 055-940-35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「거창군 지하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지하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거 창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거창군 지하수 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련한 「지하수법」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 감액기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군민 감경혜택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액기준 신설
 -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 제항 단서에 의하면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금액을 1/2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
 -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감액기준 신설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1. 1. 7. ~ 2021. 1. 27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환경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 방문 등

- 주 소 : (우 50132)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, 환경과

- 전화번호 : 055)940-3513

- FAX : 055)940-3759

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)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50 감액
2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30 감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3조의2(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) <u>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50 감액 2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30 감액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례명 : 「거창군 지하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관 계 법 령

□ 「지하수법」

제14조(이행보증금의 예치)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
2.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, 예치의 시기·방법·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「지하수법 시행령」

제22조(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) ① 법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9조의4제1항,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·이용에 관한 허가·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·유가증권 등으로 예치(預置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30., 2013. 3. 23., 2018. 6. 8.>

-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,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12. 30., 2013. 3. 23., 2018. 6. 8.>
-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2. 30.>
- ④ 법 제7조,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·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·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, 개발·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·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 <개정 2011. 12. 30.>
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(이하 "원상복구 의무자"라 한다)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2. 30., 2013. 3. 23., 2018. 6. 8.>
- ⑥ 삭제 <2001. 12. 19.>
- 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

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<개정 2011. 12. 30.>

□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

제17조(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)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1.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·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
2.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

② 제1항에 따른 제거·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(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10. 31., 2018. 6. 8.>

[전문개정 2012. 2. 23.]

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 ·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. 8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지구의 명칭 : 2019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/ 지동지구
 2. 사업시행자 : 거 창 군 수
 3.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 : 124필, 32,899.8m²
 4. 지적확정조서 : [붙임] 참조
 5. 공람기간 : 2020. 1. 8. ~ 2020. 1. 21. / 14일간
 6. 공람장소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
 7. 공람 비치서류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 8. 문의처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(055-940-3322)
-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. 끝.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투표법」 제9조 및 「거창군 주민투표조례」 제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(단위 : 명)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	비 고
계	주민등록자	외국인		
52,709	52,668	41	5,271	청구권자 총수의 1/10 이상

2021년 1월 8일

거 창 군 수

■ 군의회 의원

선거구	읍·면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(20/100)	읍·면별 최소 서명인 수	비 고
합 계		52,677			
가 선거구	거창읍 (상동 제외)	27,117	5,424	5,424	○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
나 선거구	계	11,261	2,253		○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읍·면 이상에서 읍·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	거창읍(상동)	6,141		113	
	북상면	1,447		113	
	위천면	1,794		113	
	마리면	1,879		113	
다 선거구	계	5,838	1,168		○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2개 면 이상에서 읍·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	주상면	1,453		59	
	응양면	1,753		59	
	고제면	1,351		59	
	가북면	1,281		59	
라 선거구	계	8,461	1,693		○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되, 2개 면 이상에서 읍·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
	남상면	2,220		85	
	남하면	1,352		85	
	신원면	1,412		85	
	가조면	3,477		85	

2021년 1월 8일

거 창 군 수

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1조 및 「거창군 조례제정·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(단위 : 명)

조례 제정·개폐 청구권자 총수			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	비 고
계	주민등록자	외국인 (영주의 체류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)		
52,708	52,668	40	1,055	청구권자 총수의 1/50 이상

2021년 1월 8일

거 창 군 수